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2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황운하 · 임미애 · 최혁진
김준형 · 손 술 · 용혜인
이주희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 규정하여 교통에 대한 사회적 권리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버스의 경우 민간회사가 사업면허를 사유재산처럼 보유 및 양도해 온 구조가 이어지고 있음.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한 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만 부담하여 사실상 민영제나 다름없는 실정임. 그 결과 대중교통인 버스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고착화되고 막대한 세금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음. 이런 폐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인 시민들이 버스를 비롯한 교통정책 결정에 참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도록 함. 아울러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두고 교통기본권 관점에서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를 “이용을 촉진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버스 공영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의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9.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버스 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 실시지역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본문 중 “육성·지원하고”를 “육성·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라 한다)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 소속으로 주민참
여 노선결정위원회 등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이하 “주민참여 노선
결정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
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시행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의 구
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다.

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버스 공영제 등 도입·운영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u>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이용을 촉진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하여</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버스 공영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의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u><신 설></u>	9.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u>위임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u>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설>	<u>14. 버스 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 실시지역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u>
14. (생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u>육성·지원하고</u>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① ----- ----- ----- ----- ----- ----- ----- <u>육성·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u> ---- ----- ----- -----

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 소속으로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등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이하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u>한다.</u> <u>④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시행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u>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버스 공영제 등 도입·운영</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	---